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18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이원택・이병진・임호선

최민희 · 정청래 · 윤준병

김승원 · 임미애 · 서삼석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 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8)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u>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u>	<u>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u>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해서만 적용한다.	<u>하며, 제6호는 2025년 12월 31</u>		
	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u> 적용한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